정보공개규정

(최종 개정일 2023.11.01.)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명지대학교(이하 "우리 대학교"라 한다.)가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 개 및 정보공개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내 외 구성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①이 규정에서 말하는 "정보"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·도 면·사진·필름·테이프·슬라이드 및 컴퓨터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.
 - ②"공개"란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한 청구를 받았을 때 열람·사본·복제물 등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.

제 2 장 정보공개의 절차

- 제3조(청구방법)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작성하여 인권·감사위원회 법무감사팀(이하 "해당부서"라 한다.)으로 제출해야한다.(변경 2022.4.1., 2023.08.29)
- 제4조(정보공개여부의 결정 및 통지) ①총장은 10일 이내에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정보(공개 부분공개 비공개)결정통지서(별지 제4호 서식)에 의하여 통지한다.
 - ②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통지 후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
 - ③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 후 10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 - ④해당부서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부서(공개 청구를 받은 당해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.)로 보내 신속하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.
 - ⑤정보공개 청원에 관한 업무처리 내용을 정보공개처리대장(별지 제5호 서식)에 기록 관리한다.

제 3 장 비공개 대상 정보

제5조(비공개정보) 정보공개를 요청 받았으나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 공 개에 관한 법률 제9조(비공개대상정보)를 준용한다.

제 4 장 불복 구제 절차

- 제6조(이의신청) ①정보(공개 부분공개 비공개)결정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은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제출하여 정보공개를 재청구 할 수 있다.
 - ②이의신청에 관한 업무처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.

제 5 장 정보공개심의위원회

- 제7조(위원회)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제반 운영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)를 둔다.
- 제8조(구성 및 임기) ①위원장은 인권·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.(변경 2023.11.1.)
 - ②위원은 기획조정실장, 교육지원처장, 입학처장, 학생처장, 취창업지원처장, 사무지원처장, 대학원 교학처장, 산학협력단장, 도서관장, 전산정보원장, 대외협력·홍보위원회 부위원장, 인권·감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정보공개 사안에 따라 관련전문가를 2인 이 내로 위촉할 수 있다.(변경 2022.3.1., 2023.11.1.)
 -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.
 -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무감사팀장이 된다.
 - ⑤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
- 제9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공개 청구된 정보를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
 - 2.정보공개 결정통지와 관련한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
 - 3.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제10조(회의)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- ②회의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처리부서의 장, 관련 담당자, 정보공개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제11조(안건상정) 처리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구비서류가 첨부된 안건상정요청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제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
 - 가.정보공개청구서
 - 나.처리부서의 검토의견
 - 다.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
 - 2.제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
 - 가.정보공개청구서
 - 나.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부서의 정보공개 결정 또는 비공개 결정 이유
 - 다. "나" 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경위

라.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마.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

제12조(회의록)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제 6 장 기 타

제13조(비용부담) 정보의 공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인의 실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4조(준용)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,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정 보 공 개 청 구 서

※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.

전				접 수 번 호							
청	이 (법인명 및		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 등)							
구인	전자우편 (E-M		1								
	주 (소재	소 지)		(전	화번호))					
정	보 내	용									
사	용목	· 적	□학술연구 □사업관련 □행정감시 □쟁송관련 □재산관련 □기타(
공	개 빙	법	□열람 □시청 □사본·출력	물 □복제물 □인회	·물 □기타()						
유	위와 같 0	l 정보	공개를 청구합니다.								
			년 월	일							
	청 구 인 (서명 또는 인)										
	명지대학	학교 총	장 귀 하								

접 수 증

접수	번호					청구인	<u>민</u> 이름				
접수자	직 급	<u> </u>				0	름		(서명	또는 인)	
	귀하	·의	청구서	는 위의	라 같0	접수	리었습L	1다.			
				년	월		일				
	명지대학교 총장										
※정보공	개의 처리	의 와	관련하(겨 문의 <i>/</i>	사항이 9	있으면 [나음의 연	락처로	문의하여	주시기	
바랍니	다. 🏗	연락	t처 : 03	1-330-	6701						

정보공개(비공개)결정 이의신청서

※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.

졑	성 일 자	접 수 번 호								
이 이 :	이 름 (법인명 및 대표자)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 등)								
신 청 인	주 소 (소재지)									
Ы·	공개 또는 공개 결정내용									
思	지서 수령유무	□ 정보(공개·부분공개·비공개) 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. □ 정보(공개·부분공개·비공개)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.								
	이의신청의 위지 및 이유									
정		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(비공개)결 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.								
		년 월 일								
		이의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				
	명지대학교 총장 귀 하									

안 건 상 정 요 청 서

※ 심의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처리부서에서 기입하지 않습니다.

슫	l의 점수일자					심의 접=	수번호	
청	이 름 (법인명 및 대표자)					주민등록 (사업자등		
구 인	주 소 (소재지)				1			
	정 보 내 용							
	상 정 사 유							
정	!보공개규정 제	9조에	의하여	위외	· 같이	정보공개	심의를	요청합니다.
			년		월	일		
					부 서	장	(서 5	명 또는 인)
	정보공개심의위	위원장	귀 ㅎ	ŀ				

(앞면)

정보(□공개 □부분공개 □비공개) 결정통지서

문서번호 : 수 신 :									
접 수 일 자		접 수 번 호							
청구 정보 내용									
공 개 내 용									
비공개(전부 또는 일부) 사유									
공 개 방 법	□열람 □시청 □사본· 출 □기타(홀력물 □복제물 □인화물)							
공 개 일 시		공 개 장 소							
수 수 료	원	·							
기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정보공개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									
	년 월	일							
 명기	지대학교 총장	인							

※ 유 의 사 항

-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,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 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 - 1.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)
 - 2.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-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정보공개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(공개·부분·비공개)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하실 수 있습니다.
-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 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.

[별지 제5호 서식]

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11.11.1>

정보공개처리대장

(앞 쪽)

	접수일					청구사항			결정내용				처리사항		
접수번호		청구인	정보 내용	공개 방법	담당 부서	결정 구분	공개 내용	비공개(부분공개) 내용 및 사유	결정 통지일	공개일	수령 방법	비고			

297mm×210mm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

작성 방법

- 1. "정보내용"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적습니다.
- 2. "공개방법" 항목에는 열람・시청, 사본・출력물, 전자파일, 복제・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방법을 적습니다.
- 3. "결정구분" 항목에는 공개·부분공개·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적습니다.
- 4. "공개내용"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적습니다.
- 5. "비공개(부분공개) 내용 및 사유"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내용을 적고 정보별 비공개(부분공개) 사유를 적습니다.
- 6. "수령방법"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・우편・모사전송・정보통신망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적습니다.
- 7. "비고"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적습니다.